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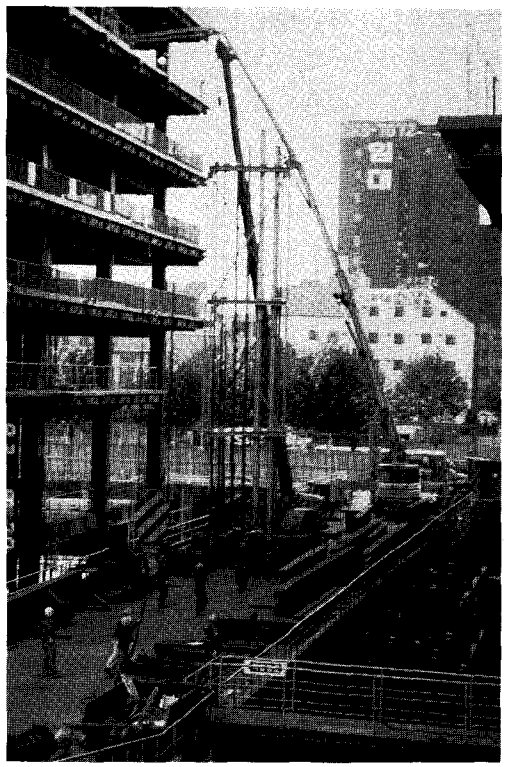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원·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의 조정범위는 원사업자의 토·건도급한도액 순위가 150위 미만인 신고사건(1~150위 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처리)에 한하며, 사건의 조정 성립시 정부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고,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경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되자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의 김장하 조정과장은 "조정신청을 하기전에 1~2회의 내용증명을 발고 난 후 신청을 하면 유리하다"고 밝히고 "계약은 반드시 구두약속이 아닌 서류에 의한 계약을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원·하도급 간의 공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계약서가 없어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전화 549-2105~6)에 접수된 분쟁사례를 이번호부터 게재 한다.

(편집자 주)

하도급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사건개요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업자(이하 신고인이라 함)○○공업(주)가 일반건설업자인 원사업자(이하 피신고인이라 함)로부터 ○○공사중 특수설비공사를 3억 4천만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피신고인 및 발주자 측의 사정으로 당초 계약공기보다 약 3개월이나 지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은 오히려 당초 도급금액에서 2천만원을 감액·정산하려고 하자 이에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당초 도급금액중 부당 감액분 2천만원과 추가공사비 2천 3백만원 및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8천 7백만원 등 총1억 3천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이첩되었다.

처리경과

2차에 걸쳐 양 당사자를 대질시키는 등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주장이 맞서 결국 분쟁조정협의회의 심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지게 되었다.

양 당사자의 주장내용

1. '당초 도급금액중 2천만원 감액부분'에 대하여

피신고인은 "계약 체결후 신고인이 공사착수를 지연시킴으로써 신고인 대신 피신고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신고인은 "피신고인 측 주장대로 착공을 지연시켰다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는데 피신고인 측이 그냥 묵과했겠는냐"며 "그것은 단지 부당감액을 정당화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 '물량 증·감액 따른 추가공사비 건'에 대하여

피신고인은 당초 계약조건에 "사소한 현장사정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금액증액은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는 한편 "물량증가분보다 오히려 감량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소위 경미한 부분에 소요되는 물량이라 하여 상당 부분을 추가물량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소요 물량에 대한 발주자 측 현장감독관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3.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피신고인은 공기지연이 "신고인 측이 계약물량에 비해 실 작업인력을 적게 투입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는 바,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는 반영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신고인은 "공기지연이 선행공종의 작업지연과 발주자 측에서 공급해 주기로 되어있는 주요자재의 공급지연등(당초 계약 공기 이후에 원도급자 현장소장 명의로 발주자 측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는 바, 그 지연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약 9천만원)는 당연히 보장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심결 내용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부당감액분 2천만원 및 물량 증·감에 따른 추가공사비 2천 50만원과 기공사대금 지급분(어음)에 대한 어음할인료 1백86만원 등 총5천2백76만원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는 당초 계약공기 만료일 익일부터 실준공일까지 집행한 공사금액에 일반관리비율 5.5% 적용(신고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적 경비는 불인정)한다.